<2026 박문각 주택관리사 핵심요약집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_정오표2

	수정 전	수정 후
P. 70 2. 종 류	단지형 연립주택 : 연립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 단지형 다세대주택 : 다세대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 5개 층	제1종전용주거지역·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 층, 그 외는 6개 층
P. 88 2. 예 외	1. … 경우에는 95% 이상의 …	1. … 경우에는 80% 이상의 …
P. 148 7.	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	
P. 141 (3)	④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.	④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P. 211 06 사고조사 1, 2 내용 수정	1.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.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	